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5. 3. 13.(목)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회 위원 검찰 즉시항고 포기서 미제출 석방지휘 불법성 강하게 규탄

- 서울중앙지법 당해 재판부에 즉시항고 포기서 서면 제출해야 효력발생 ... 13일까지 제출되지 않아
- 기자회견, 문자 통해 즉시항고 포기 밝혔지만 오는 14일까지 항고기간 남아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회 위원은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 윤석열 피고인 석방지휘의 불법성을 강하게 규탄했다.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회 위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시행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석방지휘는 불법적인 측면이 있다” 며 “신병관리주체인 서울중앙지법 당해 재판부에 즉시항고 포기서를 오늘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 고 강조했다.

□ 위원들은 또 “법원에 정식으로 서면이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효력이 없다” 면서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 취하서를 제출하겠다는 기자회견만 하고 실질적으로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하지 않으면 공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 이라고 설명했다.

□ 위원들은 검찰의 즉각적 즉시항고 또한 촉구했다.

□ 위원들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즉시항고기간이 오는 14일까지 남아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며 “심우정 총장을 포함해 검찰 관계자들이 언론을 상대로 혹은 문자, 브리핑 방식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지만 아직은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 고 역설했다.

□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의하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을 때에는 재판집행이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며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한다” 고 주장했다. <끝>

